

소장

원고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신관 3 층

대표자 김중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8층

담당변호사 최은순, 이용철, 이석범, 한정화, 이상호,
이현용

피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9. 25.에 한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서, 1998. 5. 경부터는 위 단체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두고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행정감시 및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 맑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입니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배경과 경과

원고 참여연대는 국회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금과 각 위원회 활동비 지출에 관한 예산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보아 국회 예산 지출 중 무용한 사용이나 낭비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 5. 24. 청구취지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국회의장에 대하여 하였습니다(갑제 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그런데, 2000. 6. 12. 피고는 원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내용을 일방적으로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이라고 줄여 정리한 다음에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을 2장의 용지에 정리한 내용을 사본으로 우송한 다음에 이를 정보공개라고 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갑제 1호증의 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라고 하면서 한 정보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약정리된 내용으로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어 이를 공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 9. 6. 원고 참여연대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기에 이르렀는데(갑제 2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자가 공개청구 한 내용은 원고가 종전 청구한 것을 재차 청구한 것으로 당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 2호증의 2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3.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

그러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법률 제 7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 부당합니다.

특히,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예산 중에 예비금을 두고(동법 제 23조 제 3항), 이를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 4항).

그런데, 국민이 자신들이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회예산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조문만 들어 비공개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조 제 1항 제 1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규정에도 이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동항 제 2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오히려 국회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익에 보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동항 제 6호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으며 만약, 일부 부분이 그렇다면 부분공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동항 제 7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법인관련이나 개인의 영업관련 자료인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일부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분공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을 왜곡해석한 결과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의 목적을 무시하고 국회가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입증방법

1. 갑제 1 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1.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갑제 2 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1.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통

1. 위임장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 납부서

2000. 12.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은 순

서울 행정 법원 귀 중